

# '98年度 地方債(借入金)發行 同意案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'98. 2. 5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및 장림1동사 신축비 일부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.

## 2. 主要內容

- 대상사업 :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및 장림1동사 신축
- 발행금액 : 1,450백만원
- 차 입 선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청사정비기금)
- 발행조건 : 연리3%,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
- 차입시기 : '98. 3.

# '98年度 地方債發行 同意案

1. 根 據 : 地方自治法 第115條 및 同法 施行令 第45條

## 2. 發行必要性

-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
- 지방채발행 적채사업의 장기저리의 자금제공(연3%)

## 3. 發行計劃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발행금액	차입선	발행조건	차입시기	상환재원
계	1,450				
서부산문화회관	1,250	지방재정공제회 (청사정비기금)	년리3% 2년거치10년균분상환	'98. 4	지방비 (구비)
장림1동사 신축	200	"	"	'98. 3	"

## 4. 事業計劃

### 西釜山文化會館 建立

- 사업목적 : 을숙도 상단부에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생활편의시설 및 여가선용 공간제공
- 사업개요
  - 기 간 : '95. 12 ~ '99. 12
  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-14
  - 내 역
    - 부 지 : 10,000평
    - 연건평 : 2,515.3평(지하1층, 지상2층)
    - 주요시설 : 중강당(797석), 교육시설, 회의실등

□ 長林1洞舍 新築

○ 사업목적

- 노후건물로 사무실 협소
- 동사신축으로 직원근무 환경개선

○ 사업개요

- 기 간 : '98
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776번지 지선
- 내 역
  - 부지 250평
  - 연건평 300평(지하1층, 지상2층)